

일본, 쇠고기 유통단계 이력시스템 시행

일본에서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과 관련하여 ‘소의 개체 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3년 6월 공표되어 생산과 유통에 대해 단계적으로 법을 시행하였다. 생산, 도축단계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리고 2004년 12월 1일부터는 쇠고기의 유통단계를 포함하는 법이 완전 시행된다.

1. 유통단계 이력추적시스템 대상

유통단계에서 대상이 되는 ‘판매업자’는 식육도매업자(약 1만개 회사), 식육소매점(식육전문소매점(약 2만개 점포), 양판점(약 2만개 점포)), 그리고 ‘특정요리 제공업자’(약 1만개 점포)이며, 전체적으로 약 60만의 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판매업자란 쇠고기 판매를 사업으로 행하는 자로서, 부분육 등의 도매업자, 정육 소매업자(식육소매점)가 해당 된다. 쇠고기를 원재료로 이용한 제품을 제조가공하고, 그것을 도매 판매하는 제조업자와 도시락 등을 조리하여 소매 판매하는 식품제조업자는 대상 외로 한다.

특정요리 제공업자란 특정요리(불고기, 샤부샤부, 스끼야끼, 스테이크)를 제공하는 소위 전문점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계획상 매출 및 수입에서 1가지 메뉴 또는 특정요리가 2분의 1 이상, 2가지 사업실적에서 특정요

리가 매출 또는 수입의 2분의 1 이상, 3가지 식재의 구입금액 중에서 최고
기가 2분의 1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정에 있어서 재료인
쇠고기가 국산이나 수입이냐는 구별하지 않는다.

그림 1 소의 개체 식별(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

소 (2003년 12월 1일 현재 소 및 이후 출생·수입 소를 대상)		
출 생	이동 (양도, 양수 등)	도 축
관리자 (수입·수출업자)		도축업자
소에 개체 식별번호가 인자된 이표를 장착(분리 금지)		
● 기존 소의 신고 ● 출생신고 - 탄생 연월일 - 성별 - 어미소 개체 식별번호 - 소의 품종 ● 수입신고 - 수입 연월일 - 성별 - 소의 품종 - 수입국가 ※신고와 동시에 개체 식별번호 결정	● 양도(전출) 신고 - 개체 식별번호 - 양도 연월일 - 양도 상대방 ● 양수(전입) 신고 - 개체 식별번호 - 양수 연월일 - 양수 상대방 ● 사망 신고 ● 수출 신고	● 도축 신고 - 개체 식별번호 - 도축 연월일 - 양수 상대방

주 : 신고는 농림수산성 대신(가축개량센터에 위임)에게 한다.

2. 판매업자의 의무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법이 완전 시행되는 12월 1일부터 이러한 판매업자는 판매하는 ‘특정 쇠고기’(또는 그 용기)에 개체 식별번호(또는 개체 식별번호와 대응이 분명한 로트(lot) 번호)를 표시함과 동시에, 특정 쇠고기의 반입, 판매(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제외)에 관한 사항의 기록, 보존의 의무가 부여된다.

특정 쇠고기란 표시와 기록이 필요한 쇠고기이며, 독립 행정법인 가축개량센터에서 관리하는 개체 식별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소(수입 소를 포함하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로부터 얻어진 쇠고기를 말한다. 따라서 수입 쇠고기는 대상 외가 되며, 또한 국산이라고 하더라도 내장, 머리부분, 힘줄(횡격막, 혀, 볼고기 등), 잡육, 같은 고기 및 조제·가공·조리품은 대상 외로 한다.

표시방법은 하나의 상품별로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한다. 또한 로트(lot) 번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대응하는 개체 식별번호의 조회번호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기록 및 자료 보존을 위한 장부를 비치해야 하며, 반입한 특정 쇠고기별로 그 개체 식별번호(또는 로트 번호), 반입 연월일, 반입선(이름 또는 명칭, 주소), 반입중량을 기재하여 보존한다. 또한 판매한 특정 쇠고기별로 개체 식별번호(또는 로트 번호), 판매 연월일, 판매상대(이름 또는 명칭, 주소), 판매중량을 기재하고, 기록 보존한다. 장부는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면, 양식과 보존방법(종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은 묻지 않는다. 장부는 1년마다(시기는 사업연도, 역년 등 임의) 폐쇄하고, 폐쇄 후 2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쇠고기의 이력추적시스템(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

쇠고기 (2004년 11월 30일 이전 두축 소는 제외)		
지 육	부분육	정육 · 특정요리
도축업자	판매업자 · 특정요리 제공업자	
정육 등 특정 쇠고기에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전달		
● 장부의 비치 - 개체 식별번호 - 인도 연월일 - 인도 상대방 (이름 또는 명칭, 주소) - 인도 중량	● 장부의 비치 - 개체 식별번호(로트 번호) - 반입 연월일 - 반입 상대방(이름 또는 명칭, 주소) - 판매 연월일 - 판매 상대방 (이름 또는 명칭, 주소) - 판매 중량 상대가 소비자인 식육 소매점 및 특정 요리 제공 업자는 불요	

3. 이력추적시스템의 신뢰성 제고 및 정보제공

이력추적시스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위해 일본 농림수산성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보완적 수단으로서 DNA감정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보제공은 독립 행정법인 가축개량 센터가 담당하고 있으며, 개체 식별번호를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 : <http://lin.lin.go.jp>에서
(황명철 hwangmc@nonghyup.com 02-3299-4170 농협조사연구소)